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19 발의연월일: 2020. 12. 29.

발 의 자:최혜영・이상헌・윤관석

강선우・정청래・이광재

홍영표 • 박홍근 • 황운하

이수진・이수진비・이탄희

이규민 · 허종식 · 맹성규

김승원 • 양경숙 의원

(1791)

#### 제안이유

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(이하 "재 판정"이라 한다)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 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음.

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재판정 등을 위한 장애심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.

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, 공단은 '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'에 서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,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.

따라서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, 법인, 단체 등에 정밀심사를 위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, 수수료 등 비용면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.

### 주요내용

가.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, 법인 및 단체의 장 에게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(안 제32조의9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7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8항) 중 "장애판정위원회,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요청"을 "장애판정위원회"로 한다.

제3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2조의9(자료의 요청) ①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, 법인, 단체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관・법인・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,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.
  - ②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

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,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 용료,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,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 ~ ⑥ (생	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 ~ ⑥ (현
략)	행과 같음)
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	<u>&lt;삭 제&gt;</u>
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	
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	
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	
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「의료	
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	
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	
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	
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	
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	
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, 국가 및	
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	
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	
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지원	
<u>할 수 있다.</u>	
$\underline{8}$ 제 $1$ 항 및 제 $3$ 항부터 제 $7$ 항까	<u> </u>
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	
인의 등록, 등록증의 발급, 장애	
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	
심사, 장애판정위원회, 진료에	<u>장애판정위원회</u>
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	
<u>부 요청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	

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 설>

\_\_\_\_\_

제32조의9(자료의 요청) ① 제32 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 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 관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, 법인, 단체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강보 험 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 또 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 다. 이 경우 국가기관, 지방자치 단체, 기관 · 법인 ·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, 공공기관에 제공 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 료 등은 면제한다.

②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

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 에 제공되는 자료,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 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